영등포구의회 제20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【박 미 영 의원 대표 발의】



2018. 3. 5.

社會建設委員會專門委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352호로 2018년 2월 19일 박미영 의원 대표 발의로 2월 22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의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(안 제2조, 안 제3조)
- 나.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, 측정,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 ~ 안 제7조)

- 라. 실내공기질 관리보고 및 검사, 개선명령에 관한 규정 (안 제8조 ~ 안 제9조)
- 마. 어린이, 노약자, 임산부,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
 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18. 2. 9. ~ 2. 14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 등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적정 관리와 어린이, 노약자, 임산부, 장애인 등 건강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유지, 관리,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총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

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4조에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·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6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7조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
-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보고 및 검사, 개선명령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, 노약자, 임산부, 장애인 등 건강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과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·홍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2018년 1월 현재 우리구에는 297개소의 다중이용시설 및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구민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내 공기질은 건축 자재 및 전자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외부 미세먼지 등 실 외 공기 오염 물질의 실내유입 등으로 실내공기 오염의 심각 성이 대두되고 있어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.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내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와 이에 필요한 기술적,행정적,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시설들에 대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으로 이를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(다중이용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)

구분	규모	′17년	′16년	'16년대비 증감율(%)
총 계	m²	297	295	1 %
지하역사	-	16	16	0 %
지하도상가	2,000 ^{m²}	5	5	0 %
여객자동차 터미널대합실	2,000 ^{m²}			ı
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	1,500 ^{m²}			-
항만시설 중 대합실	5,000 m²			-
도서관	3,000 ^{m²}	2	2	0 %
박물관	3,000 ^{m²}	2	2	0 %
미술관	3,000 ^{m²}			-
의료기관	2,000 ^{m²}	30	30	0 %
실내주차장	2,000 m²	149	145	3 %
철도역사대합실	2,000 ^{m²}	2	2	0 %
대규모점포	3,000 m²	23	22	5 %
어린이집	430 m²	37	37	0 %
노인요양시설	1,000 ^{m²}	1	1	0 %
장례식장	1,000 ^{m²}	1	1	0 %
목욕장	1,000 ^{m²}	13	16	△19%
산후조리원	500 m²	4	5	△20%
영화관	실내 ^{m²}	3	4	△25%
전시시설	2000 ^{m²}		-	-
학원	1,000 m²	2	1	100 %
PC방	300 m²	7	6	17 %

관 련 법 령

■『실내공기질 관리법』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(이하 "다중이용시설등"이라 한다)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22.>

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12.22.>

제9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)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25., 2015.12.22.>
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2.27.>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·방법, 측정결과의 제출·공고 시기·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12.27.>
-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05.5.31., 2016.12.27.>
-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·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 <신설2015.12.22., 2016.12.27.>

제10조(개선명령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(이하 "개선명령"이라 한다)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22.>

제12조(실내공기질의 측정)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12.22.>

- 1.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
- 2.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·관리하고 있는 다중이 용시설의 소유자등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,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2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)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어린이, 노인,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·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7.>

- 1.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
- 2.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
- 3.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

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·홍보 등의 지원을 할수 있다. <신설 2016.12.27.>

[본조신설 2015.12.22.]

■『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』

제3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)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 <2015.12.22. 개정, 2016. 12. 22.시행>

실내공기질 유지기준(제3조 관련)

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	미세먼지 (PM-10) (µg/m³)	이산화 탄소 (ppm)	폼알데 하이드 (μg/m³)	총부유세균 (CFU/m³)	일산화 탄소 (ppm)
가. 지하역사, 지하도상가, 철도역 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 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 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 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	150 이하	1,000 이 하	100 이하	1	10 이하
나. 의료기관, 산후조리원, 노인요 양시설, 어린이집	100 ০) চী			800 이하	
다. 실내주차장	200 이하			_	25 이하
라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	200 이하	_	_	_	_

비고

- 1.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,500ppm 이하로 한다.
- 2. 실내 체육시설, 실내 공연장,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200μg/m³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

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 (덕트)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.

- 가.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·배기관(급·배기구를 포함한다)
- 나. 중앙집중식 냉·난방시설의 급·배기구
- 다.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
- 라. 화장실용 배기관 마. 조리용 배기관